

# Hong Kong (SAR) Tax Alert

November 2022 | Issue 24



## 역외소득 비과세제도 (FSIE)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

### 개요

개정된 역외소득비과세제도가 IRD의 행정지침과 함께 2022년 10월 28일 공표되었습니다. 그 이후 홍콩정부는 이에 몇가지 개정사항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세무속보에서는 법안초안에 제안된 최근의 개정사항과 IRD의 행정지도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하고 몇가지 논평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역외소득 비과세제도에 대한 개정법안이<sup>1</sup> 2022년 10월 28일 관보에 게재, 공표되었습니다. IRD 역시 같은 날 해당 법안에 대한 행정지도<sup>2</sup>를 발행하여 동 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홍콩정부는 법안에 대한 EU의 반응에 대응하여 주요한 두가지 개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의 개정사항 내용과 주요 이슈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법안 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세무속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 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

역외소득비과세제도 법안 공표 후, 홍콩정부는 EU의 피드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 주요 개정사항(위원회 단계의 개정사항)<sup>3</sup>을 제안하였습니다:

- 공표되었던 법안의 Section 151가 삭제되어 법안의 적용이 제외되는 실체(법인 등)의 리스트는 더이상 없을 것임
- FSIE에서 적용 배제하는 대상을 언급하는 대신, FSIE제도의 적용이 면제되는 소득을 특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임 (소득 배제 접근법 - 특혜세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이익창출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나 그에 부수되는 역외원천의 이자, 배당, 지분처분이익 등을(지적재산권 소득을 제외한 수동적 소득 유형들, "비지적재산권소득") FSIE제도 상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

### KPMG의 논평:

- 상기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펀드 (따라서 다국적기업 그룹이 아닌)의 경우 여전히 FSIE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

ma

<sup>1</sup> The FSIE bill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https://www.gld.gov.hk/egazette/pdf/20222643/es32022264319.pdf>

<sup>2</sup> The IRD'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IRD :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up>3</sup> For details of the amendments, please refer to the Legislative Council briefing paper via this link: [bc062022111cb1-760-1-e.pdf \(legco.gov.hk\)](#)

<sup>4</sup> Excluded entity in section 151 includes an investment fund/a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n ultimate parent entity,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an entity benefiting from a preferential tax regime in Hong Kong and a non-profit organisation, etc.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펀드의 경우, 홍콩사업소득세 처리는 등 펀드가 공모(public-offered)인지 사모(privately-offered)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전자의 경우 공모펀드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가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나, 후자(사모펀드)의 경우 통합펀드면제방식(unified fund exemption, UFE)으로 혜택을 받는 펀드(혹은 그 배후의 SPV)로부터 유래하는 역외원천의 비지적재산권소득은, 동 소득이 UFE제도상 인정을 받는 활동 혹은 그에 부수되는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FSIE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배제되는 소득은 UFE제도 상 5%부수소득 임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 그러나, 홍콩의 부동산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UFE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 소득 배제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임.
- 적격투자펀드와 펀드가 아닌 투자자가 공동보유한 투자기구가 UFE제도상 부분적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FSIE제도상 소득 배제금액은 안분하여 계산이 필요함.

### FSIE 제도 법안의 핵심 개정사항

-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이라는 용어는 FSIE법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이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인지 혹은 파트너십이나 여타 법인이 아닌 실체로부터의 이익배분인지, 지점으로부터의 이익 송금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라는 용어가 FSIE법안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금융리스와 매출채권 팩토링수수료 등과 같은 소득이 이자로 취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필요함.
- **“홍콩에서 수취한 (Received in Hong Kong)”** – FSIE법안이 싱가포르와 같은 “수취간주접근법(deemed received approach)”을 도입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특정 역외소득이 홍콩 역외에서 수취되고 동 금액이 홍콩의 다국적기업실체에 의해 배당 지급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피투자회사에 지분 공여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함.
- **“순수지주회사” (pure equity holding entity (PEHE))의 정의** – IRD 행정지침의 Example 7 과 FAQ 12이 이자소득에 부수되는 수취액(은행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 하고 있으나, 현재의 협소한 순수지주회사 정의(여타 실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실체)는 일반 투자지주회사 등이 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상황에 부합하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함. 현재의 정의는 투자지주회사 등이 자회사에게 주주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이 있다 해도 순수지주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순수지주회사의 경제적실질 조건 완화** – IRD의 행정지침 Example 12에서 14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제적실질요건 사례를 설명하고 있음. Example 12에 따르면 순수지주회사는 홍콩의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와 Companies Ordinance에 따른 등록 및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관계회사와 오피스를 공유하며 두명의 거주자인 등기이사 및 홍콩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완화된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Example 14에서는 순수지주회사가 홍콩에 오직 1인의 대리인이사만을 두더라도 관련 등록 및 서류제출을 위한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고 홍콩 역외의 지분투자를 홍콩에서 관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경우 경감된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반면, Example 13에서의 사례는 회사가 등록 및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홍콩에 1인의 대리인 이사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분투자 보유와 관리 업무를 홍콩 역외의 주주와 등기이사가 담당하는 경우 경감된 경제적실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 **경제적실질요건 vs 이자수익의 원천** – FAQ 10에서는 대출로부터의 이자수익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활동은,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대출로부터의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내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재무부서 등의 이사회나 전략기획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Example 11은 신용공여 test (provision of credit test)가 적용되고 이를 통해 해당 이자수익이 역외원천으로 판단되는 경우, 홍콩에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상당수의 직원이 있는 것, 홍콩에서 관련 투자 관련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홍콩에서 상당 수준의 운영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역외소득 비과세 적용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으며 / 동시에 이자소득의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자소득의 역외소득 판단을 위해 신용공여 test가 아닌 운영 test (operation test)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실질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당 역외소득 비과세 적용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없음.

- **외주 서비스 활용** – IRD 행정지침의 Examples 16 과 17에서는 홍콩에 상장된 순수지주회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홍콩의 제3자 서비스 업체 혹은 자회사(그룹사에게 관리서비스 제공)에게 특정 활동에 대한 외주를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후속 사례에 따라 외주서비스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며 등 외주활동은 순수지주회사가 감독하여야 함. FAQ11에서는, 해당 감독활동의 운영방식이 업무 협약서 혹은 그룹사의 내부 정책 상에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통상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전가격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IRD의 기대치를 서술하고 있음.
- **참여면제제도** – 참여면제제도와 관련된 중대한 이슈사항 중 하나는 세율 15%이상 test의 “적용세율 (applicable rate)” 해석에 관한 것임. 일례로, 홍콩거주기업이 중국회사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참여면제제도 적용 조건의 하나는 처분이익이 중국의 기업소득세 상 “적용세율” 15%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FSIE법안과 IRD의 행정지도에서는, 이 경우 적용세율이 기본 기업소득세율(25%)이 아닌 이익에 부과된 실제 세율(이 경우 10%)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추가로, 중국본토와 홍콩간 조세협약이 적용되어 중국에서 해당 처분이익에 대한 조세가 면제된 경우, 적용세율이 0%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지침이 없음. 역외원천 배당의 경우, 15%이상 세율 적용 test상 지분투자구조 여러 단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규정은 복잡한 문제가 되며, 해당 규정의 실무적 운영은 IRD행정지침 상 Example 9와 10에서 찾아볼 수 있음. 또다른 미결 문제는 배당 지급의 원천이 되는 이익, 관련된 소득이 15%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이익 혹은 소득인지 여부를 어떻게 추적하고 출처를 파악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TC))** – FSIE제도 상 이중과세 /일방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방식 또한 복잡함. 특히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개별 소득 기준인지 혹은 소득 유형별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홍콩거주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이는 여타 지역의 거주자인 역외회사의 홍콩지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중과세방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 후에만 적용 가능한 세무상 손금산입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IRO의 section 16(1)(ca)상 역외지역에서의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특정 조세납부액(specified tax)”만이 손금인정 가능하며 특정조세납부액은 관련 소득 관련 지출과 관련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소득 총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금)를 의미함. 어떤 홍콩지점이 역외원천의 지분처분소득에 대해 역외에서 조세를 납부한 후, 홍콩의 FSIE 제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역외납부 조세가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액에 부과된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세무상 손금산입 모두 불가함.
- **FSIE제도 시행일** – IRD 행정지침의 Example 3에서는 2023년 1월 1일<sup>5</sup>과 그 이후 발생하여 수취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즉, 예를 들어 2022년에 수익을 인식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취한 배당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 KPMG의 논평

FSIE법안이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정부와 EU간에는 법안의 특정 조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법안 혹은 IRD의 해석에 어떤 영향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IRD에서 사례, FAQ와 함께 행정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실무적인 적용과 관련된 미결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IRD는 해당 사례와 FAQ를 때때로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 FSIE법안이 법률로 시행되는 때에 맞추어 IRD는 실무지침서 (DIPN)를 발행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항들은 FSIE제도를 둘러싼 실무적 이행의 이슈들이 복잡하며 또한 계속하여 발전/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홍콩의 사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향후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FSIE제도가 2023년 1월 1일에 실행될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새로운 제도의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고, 어떤 요구조건을 충족하기가 나은지, 그리고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경제적 실질 등을 구성할 여력 등)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무국의 의견 청취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5 The same is specified in Schedule 55 in the FSIE bill that deals with transitional provisions.

[kpmg.com/cn/socialmedia](https://kpmg.com/cn/socialmedia)



For more KPMG Hong Kong (SAR) Tax Alert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services/tax/hong-kong-tax-services/hong-kong-tax-insights.html>



For a list of KPMG China office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about/offices.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Huazhen LLP, a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nership, KPMG Advisory (China) Limit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Chinese Mainland, KPMG, a Macau (SAR) partnership, and KPMG, a Hong Kong (SAR) partnership, are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2 KPMG Tax Services Limited, a Hong Kong (S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